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090호 2019. 10. 11.(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2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864호 삼척시민안전보험 가입 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866호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결과 알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7

공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 - 12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1.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강원도 삼척시 교동 753-13	강원도 삼척시 교동로1길 15-1 (교동)	20191011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 (교동로분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0.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교동 753-13	강원도 삼척시 교동로1길 15-1 (교동)	20191011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 (교동로분기)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1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교동 753-13	강원도 삼척시 교동로1길 15-1 (교동)	20191011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교동로분기)	

삼척시 공고 제2019-864호

삼척시민안전보험 가입 공고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삼척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삼 척 시 장

1. 가입기간 : 2019. 10. 01. ~ 2020. 9. 30. (1년)
2. 피보험자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삼척시 전·출입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3. 가입회사 : NH농협손해보험
4.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삼척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삼척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삼척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삼척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삼척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삼척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삼척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 이상 의사진단시)	1,000만원

5. 특이(유의)사항

-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은 제외(상법732조)
-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하여야 함

6. 보험금 청구 문의 : ☎1644-9666(NH농협손해보험)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기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7. 기타 문의 : 삼척시 재난안전과(☎ 033-570-3892)

삼척시 공고 제2019-8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하여 청문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 10. 07.

삼 척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 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허가번호	대지위치	허가자	허가목적	허가면적 (㎡)	비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2016-252	근덕면 매원리 741-48번지 (741-51번지로변경)	김*휘 (인천광역시 계양구)	단독주택(다가구) 신축 및 부지조성	634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2017-97	성남동 산48-17번지	박*순 (삼척시 도계읍)	단독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	460	
개발행위 (토석채취) 2015-19	원덕읍 산양리 82번지 일원	㈜삼*산업 (삼척시 대학로)	육상골재채취 및 진·출입로	8,744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2017-30	자원동 산4번지 일원	안*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묘지 설치	510	
개발행위 (건축협의) 2017-131	원덕읍 노곡리 산184-1번지 일원	㈜삼*하우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6,396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2017-104	원덕읍 노곡리 467-4번지외2필지	㈜광*리더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단독(다가구)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638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허가조건 미이행
4. 처분의 근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의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결과 알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 공 고 기 간: 2019. 10. 07. ~ 2019. 10. 25. - 19일간
7. 게 시 장 소: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8. 기 타 사 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부서(033-570-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삼척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부서 ☎033)570-3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